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김희정·박준태·김상욱

이종배 · 강대식 · 이인선

성일종 · 엄태영 · 김태호

김기현 · 김도읍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고,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무공수훈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있음.

그런데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 는데, 지자체마다 대상 및 금액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국수훈자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고 무공수훈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 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 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6 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보훈영예수당

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로 하고,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보훈영예수당) ①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는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한다. 이 경우 60세 이상인 보국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9호, 제73조 및 제74조(상이를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따라 보훈영예수당과 보상금·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.

② 보훈영예수당은 「상훈법」에 따른 보국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

여 지급하되, 2개 이상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보국훈장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보훈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 중 "무공영예수당"을 "무공영예수당 및 보훈영예수당"으로 한다.

제42조제7항제4호 전단 중 "제16조의3"을 "제16조의4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11조(보훈급여금의 종류) ①	제11조(보훈급여금의 종류) ①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
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	2	
각 호와 같다.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
<u><신 설></u>	3의2. 보훈영예수당	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	
<u><신 설></u>	제16조의3(보훈영예수당) ① 60세	
	이상 보국수훈자에게는 보국의	
	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	
	예수당을 지급한다. 이 경우 60	
	세 이상인 보국수훈자가 제4조	
	제1항제4호·제6호·제9호, 제7	
	3조 및 제74조(상이를 입은 사	
	람만 해당한다)의 어느 하나에	
	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	
	금의 지급대상, 「보훈보상대상	
	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	
	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	
	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	
	급대상 또는 「참전유공자 예	
	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	
	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	

제16조의3(6 · 25전몰군경자녀수 당) (생략)

(생 략)

제20조(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) 제20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 을 사람이 「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| 제2조에 따른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(이하 "공단"이 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양로시

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 훈영예수당과 보상금·참전명 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 다.

- ② 보훈영예수당은 「상훈법」 에 따른 보국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, 2개 이상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 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보국훈장을 기 준으로 한다.
- ③ 보훈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4(6 · 25전몰군경자녀수 당) (현행 제16조의3과 같음) 제16조의4(4·19혁명공로수당) | 제16조의5(4·19혁명공로수당) (현행 제16조의4와 같음)

제20조(보운급여금의	지급정지) -

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 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 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 (무공영예수당은 제외한다)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42조(진료) ① ~ ⑥ (생 략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제16조의3제1항의 6・25전몰 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 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 상인 사람. 이 경우 같은 순 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

무공
영예수당 및 보훈영예수당
제42조(진료) ① ~ ⑥ (현행과
같음)
⑦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16조의4</u>
,

항을 준용한다.------⑧ (생 략)⑧ (현행과 같음)